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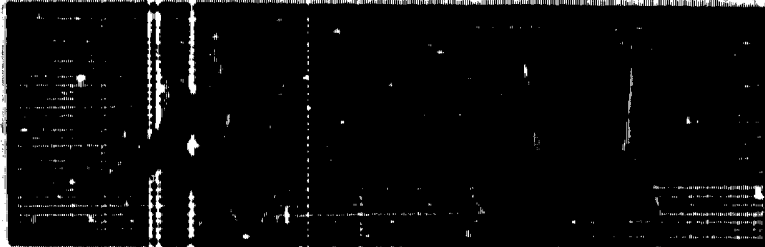
제 273 호

1972. 8. 31

발행처: 서울특별시청 양재회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출판발행업



차 례

○ 목 록

제 1242 호: 서울특별시 직제상 개정유치 3

제 1243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직제상 개정유치 12

제 1244 호: 서울특별시 과목별직제상부 직제상 개정유치 19

제 1245 호: 서울특별시 관수사업소 직제상 개정유치 13

제 1246 호: 서울특별시 시립회관 직제상 개정유치..... 14

1. 서울위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서울을 출판사로서의 목적을 읽어야.

서울특별시
1127

규 칙

서울특별시지정개발지역개발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약)시
1972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42호

서울특별시지정개발지역개발규칙

서울특별시지정개발지역개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 내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시장개발담당관) ①시정발전
에 관한 연구와 시장화 작업에 종사
하기 위하여 시장개발담당관을 둔다.

②시장개발담당관 밑에 제1개발담당,
제2개발담당, 제3개발담당, 제4개발
담당과 제5개발담당을 두고 시장개발
담당관은 시기관으로 각 담당은 지방
정서부간으로 보한다.

다만, 제2개발담당은 지방보육기과로
제5개발담당은 지방농림기과로 보할
수 있다.

③시장개발담당관실의 작업담당 분장사
수는 다음 제호와 같다.

1. 제1개발담당
 - 가. 행정체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
(기획, 경영, 조직, 인사, 컴퓨터비
한입, 민원, 운수 기타)
 - 나. 담당관실의 사무장 수장에 수하
지 아예하는 사람

2. 제2개발담당
가. 도시계획, 주택, 건축, 도부, 상.

수도 기타 건설에 관한 연구

3. 제3개발담당
가. 도시교통, 관광 및 관수시설에
관한 연구

4. 제4개발담당
가. 보건, 위생, 장소, 사회복지 및
3.시장화 대책에 관한 연구

5. 제5개발담당
가. 도시미화, 공원, 녹지 및 산업시
화에 관한 연구

제2조의 3 (감사담당관) ①사무기관에
비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수감에 관
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제1부시장급
보라한다.

②감사담당관 밑에 감사제1담당, 감사
제2담당, 감사제3담당과 감사제4담당
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시기관으로 작
담담당 지방행정수감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실 작업담당 분장사수는
다음 제호와 같다.

1. 감사제1담당
 - 가. 감사영정에 대한 종합계획
 - 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청 외부감사
에 대한 수감준비 및 사무처리
 - 다. 장관윤수단, 수도권 소관사 등에
대한 감사, 비리조사 및 비리정부
회의 징계 지정
 - 라. 식비보조단제, 식의류사기관, 기념
물에 대한 감사

마. 당장관실내 비담담 규정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제2단항

가. 기획관리관, 비상재회관, 공보실,
내무부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회 징계
처분

나. 구청,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
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
공무원회 징계처분. 다만, 구청
에 대한 총합감사는 행정과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3. 감사제3단항

가. 도시계획국, 보건사회국, 정소국,
건설부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회 징계
처분

나. 합동건설사업소, 노령노년회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회 징계 처분

다. 독립감사, 단행감사

마. 감사제4단항

(1) 시정해신에 관한 사항

(2) 인사결정 및 민원감사

(3) 중요사업 추진 차이를 관할
사항

(4) 재무국, 산업국, 주택관리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회 징계 처분

(5) 지방정전설문부, 소방본부, 농촌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회 징계

지침

제4조제1항중 "행정면주제"를 "기획
관리제"로 하고 제2항 제3호를 바
유격 같이 한다.

3. 기획관리제

가. 수도행정과한위원회 운영

나. 당장관제작 및 유지관리

다. 시청현황 자료 발간

라. 도시개발 자료실 운영

마. 행정실적의 종합기록 및 유지관리

바. 이사편환 및 봉쇄위원회 운영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보실) ①공보실장은 시기광
요로 보한다.

②공보실에 홍보계, 보도계와 문화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합
다.

③공보실의 제1분장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공 보 계

가.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나. 공업장 설치에 관한 사항

다. 비공일자 공업장위지도

라. 작업감사 및 공업에 관한 사항

마. 농고영화권업

바. 임과기사 면허

사. 시민취안일자 및 사업소 안내

아. 서울특별시보 발간

자. 시민회관, 시민교향악단, 국악관련
학단, 어린이 합창단 운영

● 차. 실내 화재 수관에 유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보 노 제

가. 시청료

나. 내의선반과 라디오, TV 방송용
위계분식

다. P. R. 용 사정업화 제작

라. 유선방송업체 운영제도

마. 성내 사정선 운영

바. 로분 세운 조사

사. 순회 영화 활동

3. 문화 내

가. 방목문화 보급, 연구, 보존

나.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의 운영

다. 방목문화재 발굴지정 및 태제

마.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

바.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사. 종교 및 문화재유한재와 기타

사회의단체의 지도 육성

아. 반공단체 지도 및 지원

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자. 부정기 간행물 출판

차. 기타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무부에 총무과, 행정과, 인사과와
시민과를 둔다.

제13조 제2항 제1호중 "차"를

"가"로 하고 "차"를 "나"로 같이

신설하며 제3호중 "취급전결선의

구분 및 사무이행제외수업"을 삭제한

다.

바. 거리별행정미사업의 통합제외 및

결과중항

제15조 「삭제」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세정과) ①세정과에 세정제,
세원제, 지적지와 차료처리제등 두교
지정제등은 지적기하로, 기타세정은 지
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세정과에 지방분할사무는 다음 각호
의 같다.

1. 직 상 직

가. 국소관 행정의 총괄조정

나. 세정운영에 관한 기본프로그램

다. 세정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의 심
사와 집행 및 집행실적에 관한 심
사와 평가조정 및 등재

라. 지방세제와 지방세에 관한 법률
행정, 과세의 연구, 세정심의 및
징비

마. 지방세법운영에 관한 조부의 심
사 및 이에 관한 문서의 보존,
보관

바. 시세, 개별세산과 세정비율 조정
비율

사. 구 세무행정과 전산적인 지도와
감독

아. 지적 및 수산부의 지적의 지도
감독

자. 지적수입 및 지적수입금의 관리
보고

차. 납세 신고에 관한 사항

야. 장수부의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및
관외 승인

마. 시세 제납외산과 개인 세조사실

<p>심사관부와 민원 또는 자문에 관한 사무처리</p> <p>과. 과오남의 훈양, 환부 및 교부금 사무</p> <p>과. 징수금 징입사회의 처리와 결산 처분의 지도감독</p> <p>과. 과내 사무의 국내 상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할 사항</p> <p>2. 세 원 계</p> <p>과. 원금계, 가동차계, 유동유치계, 도축계, 다원계, 민회계, 국산계, 농지세와 무지세 및 다른 각종 과세의 지도감독</p> <p>나. 시세에 대한 부과액통지 보고와 시세부과액의 집계</p> <p>다. 시세에 대한 시원조사표 작성 및 송출을 식세의 정정신대운수 순별지정 확인 및 관리 조감</p> <p>라.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 시가 조감액석정 확인 신청</p> <p>마. 농지세 소득표준율 변경 및 차감, 공과, 부, 입부 전담의 부과원부세입의 과세표준액 지정</p> <p>바. 시세에 대한 질의 조복과 적외 사실자청구, 소원, 인원, 모원, 갹상 사무처리</p> <p>사. 시세에 대한 사고의 범칙처리의</p> <p>와. 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정비보완 지도감독</p> <p>3. 지 복 지</p> <p>과. 지적장부의 정비 보수의 관한 지도 감독</p>	<p>나. 측량경사 (30 명이상의 공대지 도면측량, 삼각측량, 화정측량)</p> <p>다. 지적산정경사와 측량원인 경사및 사업</p> <p>라. 지적에 관한 경제 삼정인 선정 마. 보지외세기준조사 및 임대 가격선정 에 관한 지도</p> <p>바. 지적도의 작성보안</p> <p>사. 지적관계 제공명 발급에 관한 지도</p> <p>아. 지적책정</p> <p>5. 자요처리계</p> <p>가. 세무행정의 기계화 제도의 수립 에 관한 사항</p> <p>나. 부과징수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전자계산 조직의 관리 및 프로그램 등</p> <p>다. 차기데이터 및 기본자료의 관리</p> <p>라. 전자계산조직 이용 대상업무에 관한 개발연구</p> <p>마. 전자계산조직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p> <p>제 20 조 제 1 항 중 「자산관리계」분 「재산 총합계」로 하고 제 2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재산총합계</p> <p>가. 시유재산제도의 조사, 기획, 입안, 유지보안 및 운용</p> <p>나. 시유재산의 운영과 조정수계</p> <p>다. 시유재산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p> <p>라. 공용, 공공용재산의 취득차입</p> <p>마. 공유재산의 차입 (무상, 유상),</p>
--	---

제 28 조 제 2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 계획

가. 외남권사내 관련 계획 및 조망
나. 자물차간사 대영사업소가 및;
지도감화

다. 자물차 보관기후 및 구조 기준
에 관한 사항

라. 교육버스(시외버스)에 관한
사항

마. 터미널(저택, 화물)

바. 자물차 보관에 관한 사항

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9 조 (공수운행차) 공수운행차에 관

한 제 1 제와 공수제 2 제를 부교 제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상공수운행차의 지방분장사무는 다음
과호와 같다.

1. 공수제 1 제

가. 노선업종 사업 면적

나. 노선구간 길이

다. 노선인승 용지 및 비치

라. 노선업종 면허사항 부제

마. 노선업종 양모양수 및 영업인
자

바. 노선업종 면허대상 인차 정비
및 정비

사. 노선업종 운송시설 인차 취소
및 개선 명령

자. 철거소 인차 인차 및 취소

차. 노선업종 운행종 말급

카. 노후차 정비

가. 차내 타계주장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공수제 2 제

가. 구역업종 사업 면적

나. 구역업종 용지 및 비치

다. 구역업종 양모양수 및 영업인자

라. 구역업종 면허사항 부제

마. 구역업종 면허대상 인차 정비
및 정비

바. 구역업종 운송시설 인차 취소
및 개선 명령

사. 구역업종 운행종 말급

아. 택시 승차대 인차 취소 및 만
리

자. 운송인선 사업 면적

제 30 조 제 2 항 제 1 호중 "노선업종차량
운행종 말급"을 삭제한다.

제 3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2 조 (관광차) ① 관광차에 관광진흥
법, 관광사업제와 관광지도제출 부교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광차의 지방분장사무는 다음 과호
와 같다.

1. 관광진흥제

가. 관광진흥의 중장계획 수립

나. 관광선정 및 관광이념의 보급제
출

다. 관광지의 유지 및 시설안내

라. 관광시설의 설치

마.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

바. 관광안내소 운영

사. 차내 타계주장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제 42 조제 1 항중 "상징과, 불불침례과
속지과"를 "상징과와 속지과"
로 한다.

제 4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3 조 (상징과) ① 상징과에 상행제,
소계시 보호제와 지방제를 주요 제
량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상징과의 직원운장사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상 행 제

가. 특수인 행정의 분할표기
나. 지방자치 및 후보의 인정과
개선

다. 지방관계 사단법인 설립과
및 지원

라. 토목시장 운영 및 지도감독
마. 토목시장 개발지의 수립 및
분류 요청

바. 외견지상 운영

사. 상공회의소 지도 감독

아. 과의사무와 국내 타과, 제 구
관청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소비자 보호제

가. 소비자보호의 개선

나. 불가조사 및 불합법적

다. 불가수급 및 지회회 요청
라. 불공공품의 심사 요청
마. 불가의 조별 약속

바. 소비자 보호

사. 가격표시제 및 상표의 양양

아. 석유회사 유동제제 개선위원회
운영

가. 주요 생활품 비축사업

3. 계 양 제

가. 계양의 연구 및 조사

나. 계양기 검사 및 정비

다. 이터법 실시제 관련 사항
라. 계양기 사업 관리

제 44 조제 2 항제 2 호 알이제 "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수출진흥 및 장계에 관한 사항

제 46 조 「사제」

제 50 조제 1 항중 "관리제 1 과"를 "전
실행정과"로 "관리제 2 과"를 "시설
관리과"로 하고 제 2 항중 "관리제 1
과장과 관리제 2 과장"을 "전실행정과
장과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 51 조중 "관리제 1 과"를 "전실행정
과"로 한다.

제 5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2 조 (시정관비과) (1) 시정관비과에
 시정관비과, 불치유치과와 유로도묘제
 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2) 시정관비과의 직렬을 장사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관비과

가, 지하도 및 지하상도 유지관리
 나, 지하주차장 및 불명수치장 관
 리 관리

다, 유도, 입체교차로 및 가로에설
 유지관리

라, 도로상의 장애물 관리

마, 도로의 사용허가 관리

바, 도로 수역의 부양금, 도로차유
 로 수질에 관한 사항

사, 도로의 재포

아, 파면 타격부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불치유치과

가, 파손, 불유수전의 정돈 및 사
 용허가 관리 사항

나, 불유수전 매립 면허의 정산
 사항

다, 하천(계천) 주위의 교량 및

앞에 관한 사항

라, 구조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하천 및 조수유역 일출도(사용
 도) 작성, 지도작성

바, 하천 수위장 측정소 설치에 관
 한 사항

사, 수유역장(물고수역)의 설치등기
 에 관한 사항

2. 유로도묘제

가, 유로도묘제 운영

나, 유로도묘 수입금의 관리

다, 유로도묘 설치인허가 신청모집

라, 기타 유로도묘제 관한 사항

제 52 조 제 1항을 적용하여 한다.

유도차유로 수역, 조수유역장, 유수
 관리허가 등고, 하수정질관, 유수관리제
 정은, 지하도, 유도차유로, 유수, 유수관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에
 둔다.

부

이 단행. 197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안정건설사업소지침에
적용 이에 참조한다.

서울특별시안정건설사업소지침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43 호

서울특별시안정건설사업소지침
사업소지침규칙

서울특별시안정건설사업소지침
규칙 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지방기술"을 "지방
시설기술"으로 "지방부기립용" "지
방서립부기립"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관리직) 사업소에 관리직과
공사업관 부교 관리직장은 지방시기관
으로, 공사업관은 지방보육 기

제5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계 1과와
관리과를 부교 직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1. 계 부 계
 - 가. 분서, 인선 및 기인
 - 나. 인사, 봉급, 급여 및 구상
 - 다. 이종 관리
 - 라. 5.16 분장 관리
 - 마. 용지회 분장 및 비부
 - 바. 예산 및 회계
 - 사. 파견 근무와 다차, 지 구에 속
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관 리 계

- 가. 공사 지구내 용사 보수 및 보상
- 나. 각종 공사의 발주
- 다. 각종 공사를 단감자재 구입과 출납
- 라. 공사를 하게 관리
- 마. 관할 구역에 보사 대과

제6조 (공사과) ① 공사과에 제1과와 공
사제1과와 공사제2과를 두고 지상을
지방보육기라고 보한다.

② 공사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작호와 같다.

1. 계 부 계

- 가. 단감의 용납개발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 나. 개발을 위한 조사측량
- 다. 각종 토목 공사계획 설치
- 라. 공사 검사
- 마. 파면 타계 주한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람

2. 공사제 1과와 공사제 2과

- 가. 지구내 공사 시공감독
- 나. 지구내 토지정리 시공감독
- 다. 지구내 도로, 교량, 하수시설의
유지관리

제7조 (지구지정)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제1과와 공사제2과의 분장 사무는
지구권 또는 공사일로 분장하되 지구
의 지정은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8조 (직부대령) 소장이 사교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관리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호를 삭제한다.

부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상 당 내 제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4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
본부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 제 1항중 "기획계와 경리계"를

"기획계, 경리계와 운영계"로 하고

제 2항 제 2호중 "바, 기업준비계획과

그 시행"을 삭제하고 제 2항 제 3호중
아울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계

가. 지하철건설 계획준비계획 수립

나. 지하철건설계획의 수립 방법의 연구

다.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원 규정의
정비.

라. 지하철건설 요원의 교육 훈련

마. 지하철건설 요원의 확보

부

이 규칙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상운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상 당 내 제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5호

서울특별시상운사업소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상운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호 (차량운수사업소) 1. 서울특별시
사업회의 산부직, 업무처리, 관리, 차량
부고, 차량검사와 업무처리는 지상철도
운수부, 차량운수부, 차량관리부, 운수부
이다.

2. 서울특별시상운사업소 직급은 운수
사, 운전사, 차량관리사이다.

1. 사무계

가. 운전, 운전, 지상

나. 차량, 차량운수

다. 차량, 차량, 차량운수

라. 기획 및 관리

마. 운수운수

바. 운전 및 차량관리

사. 차량운수

아. 차량운수 (차량운수) 운수운수

자. 차량 및 지상

차. 운수 운수 및 차량운수

차. 운수 및 차량운수

다. 운수운수

라. 차량운수 (차량운수) 차량운수운수

제 1. 총 칙

- 제 1. 본 규약의 목적
- 제 2. 본 규약의 구성
- 제 3. 본 규약의 적용
- 제 4. 본 규약의 개정

제 2. 관 리 제

- 제 1. 관 리 자
- 제 2. 관 리 자의 임명
- 제 3. 관 리 자의 해임
- 제 4. 관 리 자의 권한
- 제 5. 관 리 자의 의무
- 제 6. 관 리 자의 책임

부 칙

이 규약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지계상계장규칙을 이
규칙으로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민회관 지계상계장

1972년 8월 30일

●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지계상계장규칙 제 12416 호

서울특별시시민회관
지계상계장규칙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지계상계장규칙을 이
규칙으로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지계상계장규칙을 이
규칙으로 개정한다. 본 규약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지계상계장규칙으로,
서울특별시시민회관지계상계장규칙을
개정한다.

제 1. 본 규약의 목적 (1) 본 규약의 목적은, 본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본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규약의 적용 (1) 본 규약은 본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관 리 제

- 가. 임 자, 임 명, 임 해
- 나. 임 자의 임명
- 다. 임 자의 해임
- 라. 임 자의 권한
- 마. 임 자의 의무
- 바. 임 자의 책임
- 사. 임 자의 해임
- 아. 임 자의 권한
- 자. 임 자의 의무
- 차. 임 자의 책임
- 카. 임 자의 해임
- 크. 임 자의 권한
- 키. 임 자의 의무
- 기. 임 자의 책임

제 3. 관 리 제

- 가. 관 리 자의 임명
- 나. 관 리 자의 해임
- 다. 관 리 자의 권한
- 라. 관 리 자의 의무
- 마. 관 리 자의 책임
- 사. 관 리 자의 해임
- 아. 관 리 자의 권한
- 자. 관 리 자의 의무
- 차. 관 리 자의 책임
- 카. 관 리 자의 해임
- 크. 관 리 자의 권한
- 키. 관 리 자의 의무
- 기. 관 리 자의 책임

제 5 조 「부 칙」

부 칙

이 규약은 1972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